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08.07.(목)]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내 부동산단 전화(1866-0243) 및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증·초본·등기사항증명서 및 소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8.12.(화)	25.08.13.(수)	25.08.14.(목)	25.08.22.(금)	25.08.25.(월) ~ 25.08.28.(목)	25.09.02.(화) ~ 25.09.0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견본주택 (주소 :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기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건축과 - 34971호(2025.08.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총 243세대 [특별공급 132세대(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56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5	01	084.9986	84	84.9986	27.0916	112.0902	62,1220	174,2122	51,0164	243	24
000338										243	24
										56	7
										21	132
										111	12

※ 평형화산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미양급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가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분양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의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	2회	3회(10%)	4회(10%)	5회(10%)	6회(10%)		
84	243	101동	2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1,2,3호	3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102동	4층	12	139,019,855	363,980,145	503,000,000	5,000,000	20,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1,2,3호	5~9층	60	139,019,855	377,980,145	517,000,000	5,000,000	20,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103동	10~15층	68	139,019,855	390,980,145	530,000,000	5,000,000	21,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2,3호	16~20층	45	139,019,855	399,980,145	539,000,000	5,000,000	21,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04동	21층 이상	34	139,019,855	410,980,145	550,000,000	5,000,000	22,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바탕)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으로 한함)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신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기준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 전기자금 기준 소유 주택의 처분을 원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기록 신청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음	- 출신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출신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신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신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신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여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로 혼인을 허용할 수 있고, 출신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신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